

#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큰애기 맛집 지정 및 지원 조례안

## (강혜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70
----------	------

발의연월일 : 2021. 11. 8.

발의자 : 강혜경, 노세영, 문희성,  
박경흠, 신성봉, 김기환,  
안영호, 박채연

### 1. 제정이유

울산큰애기 맛집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의 추진체계를 명확히 하고 울산큰애기 맛집 육성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지역 음식문화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나.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큰애기 맛집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라. 사후관리 및 지정 취소 등(안 제6조~제7조)

### 3. 근거법규

- 가. 「식품위생법」 제89조
-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큰애기 맛집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큰애기 맛집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 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울산큰애기 맛집”이란 식품접객업소 중 맛, 위생, 서비스, 환경 등이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제3조(관리계획 수립)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큰애기 맛집(이하 “큰애기 맛집”이라 한다)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큰애기 맛집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큰애기 맛집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방향
2. 큰애기 맛집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큰애기 맛집 음식문화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
4. 큰애기 맛집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맛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큰애기 맛집 지정) ① 구청장은 지역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큰애기 맛집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큰애기 맛집의 지정기준, 지정신청 및 지정심사 등에 따른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큰애기 맛집 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맛집의 활성화를 위하

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울산큰애기 상표 사용권한 부여
2. 큰애기 맛집 지정표지판 제공
3. 안내홍보책자 발간·배부 및 누리집 등을 통한 홍보
4. 위생용품 지원
5.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비 등 큰애기 맛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큰애기 맛집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2년마다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재조사 실시 방법이나 절차 등에 따른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정취소) 구청장은 큰애기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영업정지(과징금 포함)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2. 주 취급 음식이 변경되었을 때
3. 큰애기 맛집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4.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5.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소
6. 제1항에 의한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된 때

제8조(포상) 구청장은 큰애기 맛집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 3. 13.>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0. 3. 26., 2015. 5. 18., 2016. 12. 2.>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용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4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이 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에 한정한다) 상환액의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용자 사업
- 7의2.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 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 ④ 기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운용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15., 2011. 3. 30., 2013. 3. 23., 2013. 12. 30., 2016. 1. 22., 2017. 12. 12.>

1.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3. 식품첨가물제조업
  - 가. 감미료·착색료·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나.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다.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가공하는 영업
  - 라.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移行)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4. 식품운반업: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5. 식품소분·판매업

가. 식품소분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

나. 식품판매업

- 1) 식용얼음판매업: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2)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유통전문판매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 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 5) 삭제 <2016. 1. 22.>
- 6) 기타 식품판매업: 1)부터 4)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 6. 식품보존업

가. 식품조사처리업: 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영업

나. 식품냉동·냉장업: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 다만, 수산물의 냉동·냉장은 제외한다.

## 7. 용기·포장류제조업

가. 용기·포장지제조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용기류는 제외한다)·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

나. 용기류제조업: 식품을 제조·조리·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 항아리, 뚜껑 등을 제조하는 영업

##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바.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